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01
----------	-------

발의연월일 : 2025. 8. 18.

발 의 자 : 최혁진·송재봉·이재관
민형배·김준형·김우영
양문석·정혜경·이해민
박지원·이수진·전종덕
김재원 의원(13인)

제안이유

협동조합은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 회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기획재정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 수립 및 실행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행 법제와 정책 운영은 부처 간 분산 추진으로 인해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연대경제 주체 간 시너지 창출과 정책적 연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의 소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여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원 창구를 단순화하며, 조직 간 협력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창업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등 국가 경제 기반을 이끄는 다양한 정책 경험과 지원 인프라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벤처·혁신 자원과 정책수단을 협동조합 정책과 연계할 경우,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 자금·판로 확대, 경영역량 제고 등에 있어 실질적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 기본법 전반에서 ‘기획재정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함(제3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각 항, 제11조의2, 제15조제5항, 제49조의2, 제56조, 제57조, 제71조, 제71조의2, 제72조, 제80조의2, 제83조, 제85조, 제86조, 제95조의2, 제96조의2,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의2, 제108조, 제109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의2, 제115조의11, 제115조의12, 제116조, 제119조 등 다수 조항).

나.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단서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10조의2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10조의3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기획재정”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49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5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

고, 같은 조 제8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전단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72조 후단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80조의2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83조 후단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86조제3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95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9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 중 “기획재정”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103조제5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105조의2제7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108조제4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109조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113조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115조의2제1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115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115조의12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기획재정”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119조제4항 중 “기획재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회등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
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의2(경영 지원)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
합연합회등의 설립·운영에 필
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
(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재
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
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운영
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
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
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
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
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

제10조의2(경영 지원) 중소벤처기
업-----

-----.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중소벤
처기업-----

-----.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중소벤처기업-----

-----.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생략)

2.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생략)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 ④ (생략)

-----.

⑧ -----

----중소벤처기업-----
-----.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

--중소벤처기업-----

-----.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

--.

1. (현행과 같음)

2. -----
-----중소벤처기업-----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u>기획재정부</u>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 ----- -----<u>중소벤처기업</u>----- ----- -----.
⑥ (생략) 제49조의2(경영공시) ①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경영공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기획재정부</u>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u>중소벤처기업</u>----- ----- ----- -----.
③ <u>기획재정부</u>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u>중소벤처기업</u>----- ----- ----- -----. -----.
④ (생략)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 ⑥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u>기획재정부</u>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⑦ ----- -----<u>중소벤처기업</u>----- ----- -----

1. ~ 3. (생략)

⑧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7항에 따른 흡수합병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⑩ · ⑪ (생략)

제57조(해산) ① (생략)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ㄱ.

1. ~ 3. (현행과 같음)

⑧ 중소벤처기업-----

-----.

⑨ 중소벤처기업-----

-----.

⑩ · ⑪ (현행과 같음)

제57조(해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중소벤처기업-----

-----.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

-----중소벤처기업-----

-----.

-----.

② 중소벤처기업-----

-----.

③ 중소벤처기업-----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 ⑤ (생략)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1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
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
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
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
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
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
로 본다.

제80조의2(공제사업) ① (생략)

②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공
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중소벤처기업-----

-----.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준용규정) -----

-----.

-----중소 벤
처기업-----

-----.

제80조의2(공제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
-----중소 벤

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3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

처기업-----

-----.

-----.

③ 중소벤처기업-----

-----.

④ 중소벤처기업-----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소벤처기업-----

-----.

제83조(준용규정) -----

중

소벤처기업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

중소벤처기업
-----.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

1. ~ 3. (생략)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생략)

제86조(정관) ① . ② (생략)

③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대한 인가

1. ~ 3. (현행과 같음)

④ 중소벤처기업-----

~.

⑤ 중소벤처기업-----

-----.

⑥ (현행과 같음)

제86조(정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중소벤처기업-----

-----.

④ 중소벤처기업-----

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96조의2(경영공시) ① 사회적협
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
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⑤ 중소벤처기업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현행과 같음)

② -----

중소벤처기업

-----.

③ (현행과 같음)

제96조의2(경영공시) ① -----

-----중소벤처기업-----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
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
다)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
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
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
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
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협동조합
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
회적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생 략)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생
략)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
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

1. ~ 4. (현행과 같음)

② -----중소 벤
처기업-----

-----.

③ 중소벤처기업-----

-----.

④ (현행과 같음)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현행
과 같음)

② -----
-----중소벤처기업-----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중소벤처기업-----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1. ~ 5. (생략)

⑧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⑩ · ⑪ (생략)

제102조(해산) ① (생략)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

-----.

1. ~ 5. (현행과 같음)

⑧ 중소벤처기업-----

-----.

⑨ 중소벤처기업-----

-----.

⑩ · ⑪ (현행과 같음)

제102조(해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청산인) ① ~ ④ (생략)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 ⑥ (생략)

⑦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소벤처기

업-----

중소벤처기업-----

-----.

제103조(청산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소벤처기업-----

-----.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중소벤처기업-----

-----.

⑧ 중소벤처기업-----

-----.

1. 2. (현행과 같음)

3. -----중소벤처기업-----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
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
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⑨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9항에
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
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
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
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
다.

제108조(해산등기) ① ~ ③ (생
략)

④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립인가
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
탁하여야 한다.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⑨ 중소벤처기업-----

⑩ 중소벤처기업-----

-----.

제108조(해산등기)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중소벤처기업-----

-----.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
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제111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
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
독하고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
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직권 또
는 신고에 따라 사회적협동조
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중소벤처기업-----

제111조(감독) ① 중소벤처기업-----

② 중소벤처기업-----

1. ~ 3.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

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생략)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소벤처기업-----

-----.

⑥ 중소벤처기업-----

-----.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

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3조(청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4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15조의2(설립인가)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5조의4에 따른 회

-----.

-----.

1. ~ 5.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

-----.

제113조(청문) 중소벤처기업-----

-----.

제114조(설립인가 등) ① -----

중소벤처기업-----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5조의2(설립인가) ① -----

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5조의12(청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5조의11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

-----.

1. ~ 5.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

-----.

제115조의12(청문) 중소벤처기업-----

-----.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

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119조(과태료) ① ~ ③ (생략)

-----.

② -----중소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

③ 중소벤처기업-----

-----.

제119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기획재정부</u>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④ ----- ----- ----- <u>중소벤처기업</u> ----- <u>기업</u> ----- -----.
--	--